

호주 新정권의 과학기술정책

박경선¹⁾

호주에서는 1996년 2월, 총선거가 실시되어 13년만에 정권이 교체되었다. 신구 양 정권 모두 기본정책에는 커다란 차이는 없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는 없다. 그러나 개개 시책을 검증하면 많은 점에서 신구 양정권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반영한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

1. 13년만의 정권교체

연방총선거(하원 148의석, 상원 76의석 중 40의석이 改選)에 대한 투표가 1996년 3월 2일에 실시되어 하원에서는 자유국민연합 94의석, 노동당 49의석, 무소속 5의석, 상원에서는 자유국민연합 37의석, 노동당 29의석, 기타 10의석으로 자유민주연합의 압승이 되었다. 관례에 따라 하원의 과반수를 획득한 자유민주연합이 정권을 쥐게 되어, 존 하워드 자유당 당수가 호주의 25대 수상으로 취임하였다. 이로써 1983년 이래 계속된 노동당 정권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동 선거의 결과를 받아들여 하워드 신 당수는 3월 8일에 신내각을 조직하고, 3월 11일에 연방 총독의 임명을 받아 신정권이 정식으로 발족하였다(주: 호주의 원수는 엘리자베스여왕이며, 연방 및 각주에 여왕의 대리인 총독이 임명되어 있다). 주요 각료 중 과학기술정책에 관련되는 주요 장관으로, 부수상에는 무역부 장관겸 국민당 당수인 팀 포셔, 산업·과학·관광부 장관에 존 무어, 고용·교육·훈련·청소년 문제장관에 아만다 반스톤, 1차 산업·에너지부 장관에 국민당 부당수인 존 앤더슨, 통신·학술부 장관에 리차드 알스톤이 각각 취임하였다.

2. 신정권의 과학기술 관련 조직개편

신정권이 성립된 이래, 각종 정부기관의 기구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이하에 현재(1996년 11월)까지 이루어진 과학기술정책 입안, 연구개발관련기관의 기구개혁을 열거해보았다.

1) 각종 과학기술정책 관련 자문위원회의 조직개편

먼저 호주의 과학기술정책 입안의 틀이 크게 바뀌었다. 수상과학공학자문위원회, 과학기술조정위원회, 호주과학기술공학자문위원회의 사무국이 수상부에서 산업·과학·관광성 산하로 이관된 것이다. 이 중 호주과학기술자문위원회(ASTEC)는 1996년 10월에 조직 그 자체가 동성 내로 이관되었다. 수상과학공학자문위원회(PMSEC)와 과학기술조정위원회(CCST)는 예산서에는 조직이 동성으로 이관된다는 취지가 기술되어 있지만, 동성의 조직표는 변경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 조직적으로는 수상부에 있고 사무국만이 동성 담당이 될 것인지, 조직 그자체가 동성 내로 이관될 것인지는 Investing in Tomorrow 속에서도 밝혀져 있지 않아, 1996년 11월 시점에서는 불분명하다. 또 산업·과학·관광성에 이관된 호주 과학기술자문위원회(ASTEC)에 대해서도 Investing in Tomorrow 속에서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의 이관이 최종적이지 않는 과도기적인 조치일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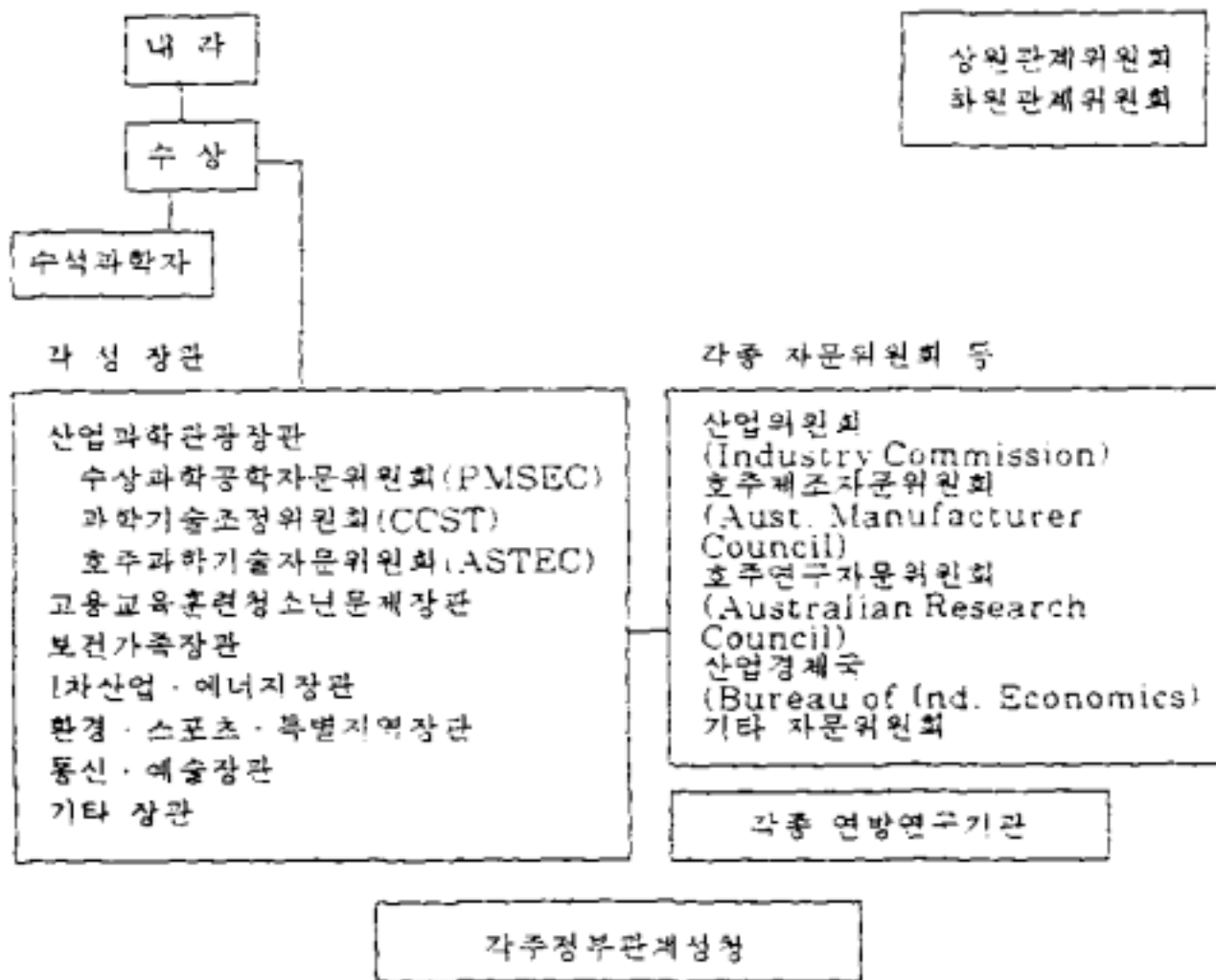
이상에서 처럼, 종래 주석과학자사무국이 세가지 위원회의 사무국으로서 과학기술정책입안의 열쇠가 되는 조직이었지만, 이번의 조직 개편으로 산업·과학·관광성이 과학기술정책전반에 책임을 갖는 중요한 조직이 되었다. 앞으로는 개별 과학기술시책은 종래대로 산업·과학·관광성을 포함하는 많은 성청에서 이루어지는데, 기본정책의입안에 대해서는 산업·과학·관광성이 사실상 다른 성청의 상위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종래 이 3개 자문위원회의 사무국을 맡고 있던 주석과학자사무국의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는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본래의 임무인 수상의 과학기술고문·어드바이저로서의 역할에 특화할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입안의 틀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각 자문위원회의 기능에도 변화가 있다. 수상과학공학자문위원회(PMSEC)는 수상을 의장, 과학기술소관 장관을 부의장으로 하여 관계장관, 학술계, 산업계 대표, 수석 과학자 등을 멤버로 하여 종래와 같이 정부의 중요 과학기술정책에 대하여 자문을 받는 기관이지만, 앞으로는 국가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등에 대하여 수상에게 조언하는 기능이 중시

되도록 하고 있다. 과학기술조정위원회(CCST)는 관계 각 기관의 차석보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상과학공학자문위원회(PMSEC)의 하부기구적인 위치이며 사실상 각 성·기관간의 조정 역할도 맡고 있다. 호주과학기술자문위원회(ASTEC)는 1975년에 설립된 법정의 독립된 수상의 자문기관이며, 국가 목표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의견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1989년에 수상과학공학자문위원회(PMSEC)가 설립된 이래, 양자의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존재감이 희박해지고 있었다.

따라서 정권교체 후 공학(Engineering)에 책임을 갖는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부가하여 명칭도 호주 과학기술자문위원회(Australian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ASTEC)에서 호주 과학기술공학자문위원회(Australian Science Technology and Engineering Council: ASTEC. 약칭은 변함없음)로 변경하였다.

<그림 1> 호주의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입안의 틀



주) 각종 자문위원회는 사실상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만을 열거하였다.

2) 구산업·과학·기술성의 조직개편

과학기술정책을 직접 담당하고 있던 산업·과학·기술성(Department of Industry, Science and Technology: DIST)은 신정권 발족 직후인 1996년 3월에 관광성(Department of Tourism)을 사실상 흡수합병하여 산업·과학·관광성(Department of Industry, Science and Tourism: DIST. 약칭에 변화없음)이 되었다. 또 1996년 10월에는 동성 내부 부국의 조직 재편성이 이루어졌다.

과학기술부 (Science and Technology Division)는 종래대로 내부부국으로서 존재하는데, 종래의 과학기술정책고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Branch), 국내과학기술사업과(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rogram Branch) 국제과학기술사업과(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rogram Branch)와 더불어 1996년 4월에는 새롭게 과학기술자문과(Science and Technology Advisory Branch)가 설치되었다. 동 과는 종래 수상·내각부에 있었던 주석과학자(Chief Scientist) 사무국의 기능을 이어받아, 수사과학공학자문위원회(PMSEC), 호주과학기술자문위원회(ASTEC) 과학기술조정위원회(CCST) 활동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들 사무국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또 동 과는 종래 행정서비스성(Department of Administrative Service)에 있었던 유전자조작의 개발규제를 하는 유전자조작자문위원회(Genetic Manipulation Advisory Committee)사무국의 업무도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호주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담당하고 일본·호주 협력프로젝트였던 MFP(Multi-Functional Police)의 추진 모체였던 무역·투자촉진조정부(Trade Investment Facilitation Coordination Division)가 폐지되었다. 새롭게 장관의 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업무국(Corporate Service Division)이 새롭게 설치되었다.

또 호주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등을 사명으로 하는 호주산업(Ausindustry)실은 조직이 대폭적으로 간소화되어 종래의 8과체제에서 5과체제로 개편되었다. 무역·투자촉진조정부에 있었던 국제과, 투자촉진과는 부의 폐지에 따라 각각 산업정책부 국제과, 산업B부 투자촉진과로 재편되었다.

3) 연방과학산업연구기관(CSIRO)의 조직개정

연방과학산업연구기관(CSIRO)은 예산규모로 보나 연구자 수의 규모로 보나 호주 최대의 연구기관으로, 산업·과학·관광성(DIST)에 소속된다. 정권교체 후인 1996년 3월에 대폭적인 조직개정이 이루어졌다.

조직개정 전의 연방과학산업연구기관(CSIRO)의 조직은 다음과 같았다. 연방과학산업연구기관(CSIRO)은 본부(Corporate) 산하에 정보과학공학연구소, 공업기술연구소, 광업에너지 연구소, 동물생산가공연구소, 식물생산가공연구소, 천연자원 및 환경연구소의 6개 연구소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동 기관은 내부부국으로서 관리위원회(이사회) 하에 인사, 예산, 자산, 정보서비스, 정보기술서비스, 국제연계 등의 담당을 가지고 있었다. 또 각 연구소는 연구분야마다 연구부(Division)을 가지는 외에, 연구소마다 인사, 예산, 계획, 평가, 시장개발등의 관리부문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의 조직개편의 최대 포인트는 종래, 본부(Corporate)-연구소(Institute)-연구부(Division)으로 3중구조로 되어 있던 조직에서 연구소를 폐지하고 본부-연구부의 2중구조로 변경한 점이다. 이에 따라 각 연구소마다 관리 부들도 폐지되어, 그 기능의 대부분은 본부에 집약되었다. 연구부(Division)는 기초적 연구실단위로서 종래의 조직 0명칭도 그대로 거의 남게 되었다. 앞으로 연구계획, 연구 우선순위 부여는 본부(corporate)-연구부(Division)마다 Sector Advisory Committee의 자문을 받아 이루어진다.

기구개혁의 두 번째 점은 본부에 부원장(Deputy Chief Executive)의 포지션을 4개만든 점이다. 부원장은 개개 연구부를 분장할 뿐 아니라 본부-연구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책임을 갖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포지션을 연구소를 폐지함에 따른 대체 포스트 창설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번의 조직개정의 주목적은 첫째로 세계수준의 연구를 실시하기위해 복수의 전문가를 횡단적인 팀으로 모으기 쉽도록 하는 것, 둘째로 사회의 니즈에 따른 균형을 이룬 프로젝트 구성을 취하기 쉽도록 하는 점으로 되어 있다.

4) 과학기술 관련 기관의 기타 조직개편

성차원의 과학기술에 관련이 깊은 기관의 기구개혁이 몇가지 실시되었다. 하나는 고등교육, 직업훈련 등을 소관하는 구 고용·교육·훈련성(DEET)이 청소년문제도 담당하게 되어, 성의 명칭도 고용·교육·훈련·청소년문제성(Department of Employment, Education, Training and Youth Affairs: DEETYA)으로 된 것이다. 또 하나는 주택지역개발성이 폐지되고 지역개발부문이 운수성(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 흡수되어 명칭은 운수·지역개발성(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이 된 것이다.

또 호주 핵과학연구기관(ANSTO)의 기능 재검토도 이루어졌다. 앞으로 동 기관은 연구분야를 원자력과 그의 응용기술

에 두게 되어, 다른 연구분야에 대해서는 축소되었다.

3. 신정권의 과학기술정책 - 예산조치

1) 예산편성의 구체적 사고방식

하워드 수상은 예산과 산업의 관계에 대하여 방일시 일본경제계와의 모임에서 한 연설속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공헌은 비즈니스가 번영할 수 있는 소지를 육성하기 위한 거시 및 미시의 경제정책을 책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신정권 최초의 예산에 대하여 「나의 정부가 최우선 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정연된 예산의 편성이다. 우리들은 이번 회계연도 중에 근본적인 적자인 39억달러, 1997~1998회계년도에는 72억 달러를 삭감하고 1998~1999회계년도에는 흑자로 하려고 한다. 세출은 1995~1996회계년도에는 국내 총생산의 27.2%였던 것을 1997~1998년도에는 국내총생산의 거의 2% 줄인 25.4%로 하려고 한다. 이것은 1989~1990년도 이래 최저수준이다. 국가지출의 증가는 투자자금을 돕고 경상적자와 금리에 대한 압력을 경감하여 호주의 경제와 고용의 성장을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다.」라고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이 긴축예산임을 말하고, 이 긴축예산이야말로 호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2) 과학기술관련 예산의 개요

먼저 과학기술 관련 1996/1997년도 예산 내용은 크게 ① 국립연구기관의 연구비, ②기업 등이 실시하는 연구개발에 대한 그랜트, ③세제상의 우대조치에 따른 감수예정분, ④대학 등 고등연구기관에 있어서의 연구비(그랜트 포함)의 4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총액은 1996/1997년도 예산으로서 37억 5,200만 호주 달러가 계상되어 있으며, 노동당 정권 시대인 1995/1996년도 예산(38억 3,900만 호주달러)에 비하여 8,700만 호주달러 2.3%의 감소로 되어 있다. 노동당 정권시대 10년 이상 신장을 계속해 온 과학기술예산이 서서히 감소로 돌아서게 된다. 또 물가상승분을 조정한 실질 베이스에서도 1996/1997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5.1%의 대폭적인 감소로 되어 있다.

1996/1997년도 예산의 GDP 대비율은 0.732%이며, 이것도 노동당 정권시대인 1995/1996년도 예산의 0.795%에 비하여 대폭적인 감소로 되어있다.

신정권의 과학기술예산의 삭감은 위에서 말한 과학기술관련 기관의 조직개편과 함께 하워드 수상의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인 「긴축예산」을 여실히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내용적을 보면, 국립연구기관의 연구비는 9억 801만 호주달러에서 9억 6,320만 호주달러로 6.1% 증가, 기업등이 실시하는 연구개발에 대한 그랜트는 5억 6,970만 호주달러에서 6억 1,370만 호주달러로 7.7% 증가, 대학등 고등연구기관에 있어서의 연구비는 15억 5,120만 호주달러에서 16억 2,830만 호주달러로 5.0% 증가로 모두 순조로운 신장을 나타내었고, 세제상의 우대조치에 따른 감수예정분만이 8억 100만 호주달러에서 5억 4,700만 호주달러로 32.5%의 대폭적인 감소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신정권은 예산서 속에서 「세제상의 조치는 투명도가 낮다(효과를 보기 어려운 의미와 제도의 운용의 애매한 양쪽의 의미로 해석된다)」. 「간접원조(세제)에서 직접원조(그랜트 등)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또 이와 같은 예산편성은 자유국민연합의 선거공약에 나타난 「기초연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의 연방과학산업연구기관(CSIRO)의 역할을 중시하여 동 기관에 대한 연구개발예산을 증액한다」, 「대학의 연구기반정비예산을 충실히 하는 것」, 「호주연구자문위원회(ARC)를 통한 대학에 대한 연구그랜트를 증액한다」라는 내용을 충실히 유지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감액대상이 된 연구개발촉진세제는 공약속에서는 「연구개발촉진세제의 운용에 잘못이 있는 점」이 지적된데 그쳐, 제도를 존속시키고 있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제도의 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구개발촉진세제는 종래의 150%세제에서 125%세제로 제도개정이 이루어져 이것이 위에 말한 예산감소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예산의 증감내용으로부터, 하워드 정권은 기초적·첨단적인 과학기술의 개발에 예산을 경시하여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고도기술의 개발에 의해 호주의 과학기술 수준의 인상을 꺾는 방침을 가지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노동당 정권이 기업의 현장기술수준의 향상을 꺾함으로써 호주의 과학기술수준을 저변에서부터 끌어올리려

고 한 것과 대조적이다.

3) 국립연구소 관련예산

호주의 연방 연구기관인 1996/1997년도 예산의 개황을 <표1>에 나타내었다. 각 성청별 주요 연구기관의 예산이 나타나 있다. 산업과학관광성 산하 연방과학산업연구기관(CSIRO)의 예산이 1995/96년도의 4억 1,670만 호주달러에서 4억 4,360만 호주달러로 6.5% 신장하고 있는점, 1차산업·에너지성 산하 지질조사기관(AGSO)의 예산이 1995/96년도의 6,800만 호주달러에서 1억 1,860만 호주달러로 대폭적으로 신장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이외의 연구기관의 예산은 감소, 보합, 약간 증가에 머물고 있다.

연방과학산업연구기관(CSIR)은 예산규모로 보나 연구자 수의 규모로 보나 호주 최대의 연구기관이며, 정보과학공학 공업기술, 광업에너지, 동물생산가공, 식물생산가공, 천연자원·환경 등 거의 모든 과학기술·공업기술에 이르는 폭 넓은 연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행정적으로는 자원에너지, 농림수산, 축산업은 1차산업·에너지성 소관이며, 실용화연구도 동성산하 연구개발공사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이들 분야의 기초연구는 CSIRO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동

<표 1> 주요 연방연구기관의 연구예산 개요(1996/1997년도)

(단위: 백만 호주달러)

	'95/'96	'96/'97
환경·스포츠·특별지역성		
남극국 중앙기상연구소 감독과학자	63.1 4.0 6.0	61.0 4.3 6.0
국방성		
국방과학기술기관	248.2	228.3
고용·교육·훈련·청소년문제성		
꽃잠공동천문관측국	3.2	3.3
보건·복지성		
호주보건복지연구소 CSL 원자력안전국	7.1 2.8 0.9	7.6 2.9 0.9
산업·과학·관광성		
호주원자력과학기술기관(ANSTO) 호주해양과학연구소(ADVE) 연방과학산업연구기관(CSIRO)	65.6 16.6 416.7	63.7 16.4 443.6
1차산업·에너지성		
CSIRO에 대한 이전분 지질조사기관	5.8 68.0	6.0 118.6
합 계	908.1	963.2

(주) · 예산계상분만이며, 다른 소스로부터의 연구개발지원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1995/96년도의 수치는 작년도 예산서(추계치 포함)와 약간 다르다.

출처: Science and Technology Budget Statement 1996/97.

기관은 소위 호주전체의 기초과학기술연구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동 연구기관의 예산의 총실은 자유국민연합의 Investing in Tomorrow에 나타난 「기초연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의 연방과학산업연구기관(CSIRO)의 역할을 중시하여 동 기관에 대한 연구개발예산을 증액한다」라는 선거공약에 합치하는 것으로, 하워드 정권의 기초적·첨단적인 과학기술의 개발에 예산을 경사하여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고도기술의 개발에 의해 호주의 과학기술수준의 인상을 꺾하려는 방침이 여기에도 나타나 있다.

지질조사기관(AGSO)에 대해서는 1996/97년도 예산은 새로운 연구소 빌딩 건축비용 6,100만 호주달러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소 예산 그 자체는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표1>에 나타난 금액은 각주에도 기재한 바와 같이, 정부의 연구소 예산계상분만이다. 각 연구기관의 수입은 이 밖에도 사업수입(공업소유권의 사용허락료, 자산의 매각 등)과 특별프로젝트에 부수되는 예산이 있으며, 이것을 외부수입(External earning)이라 부르고 있다. 연방과학산업연구기관(CSIRO)의 경우, 정부로부터의 직접적인 연구소 예산은 연간 4억 4,400만 호주달러이지만, 이들 외부수입을 포함하면 연간 7억 100만 호주달러에 달한다.

4) 산업계 등에 대한 지원금 관련 예산

기업 등이 실시하는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금 예산 및 관련예산을 <표2>에 나타내었다. 지원금은 연구분야마다 수 많은 제도가 준비되어

<표 2> 주요 과학기술혁신 지원금 예산의 개요(1996/97년도)

(단위: 백만 호주달러)

	'95/'96	'96/'97
환경·스포츠·특별지역성		
생물자원조사 그린하우스 연구	1.8 6.0	1.5 4.0
고용·교육·훈련·청소년성		
연구평가, 연구소간 연계 등	2.9	3.0
보건·복지성		
메이크 연구 국립보건의학연구위원회 지원금 의학연구소 설비장비 등	12.7 141.3 27.5	11.7 150.0 30.5
산업·과학·관광성		
산업혁신 프로그램 지원금 협동연구센터 지원금 국립연구시설비 컴퓨터화 지원 우주프로그램	52.4 132.7 6.1 64.1 2.7	117.9 145.1 17.0 56.5 2.6
1차산업·에너지성		
양모연구 식육연구 어업연구 곡물관련 원예연구 에너지연구 용지용수연구 지역산업연구개발기업관련 기타 지역연구	11.7 22.6 10.4 21.3 11.4 11.8 10.6 10.5 28.0	11.6 22.3 13.1 29.1 14.6 6.6 9.8 5.5 30.7
운수·지역개발성		
호주도로연구국분	2.2	2.0
합 계	590.5	674.9

(주) · 예산계상분이며, 다른 소스로부터의 연구개발지원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1995/96년도 수치는 작년도 예산서(추제치 포함)와 약간 다르다

출처: Science and Technology Budget Statement '96/'97

있다. 협동연구센터(CRC)의 예산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서 산업혁신프로그램 지원금 예산이 1995/96년도의 5,240만 호주달러에서 1억 1,790만 호주달러로 2.25배 성장하고 있는 점, 협동연구센터 지원금이 1995/96년도의 1억 3,270만 호주달러에서 1억 4,520만 호주달러로 5.3%의 신장을 나타내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여기에서도 역시 신청권의 기초적·첨단적인 과학기술의 개발에 예산을 경시하여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고도기술의 개발에 의해 호주의 과학기술수준의 인상을 꺾하로 하는 방침을 엿볼 수 있다.

「협동 연구센터 프로그램(Cooperative Research Center: CRC)」은 기업과 연구기관의 연계촉진, 사용자지향의 연구촉진을 꺾하기 위해, 대학, 연방정부연구기관, 주정부연구기관, 기업이 장기의 협동연구를 실시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前정권의 Innovation Statement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협동사업의 성과는 적극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의 62개 센터와 더불어 새롭게 5개의 협동연구센터(①엔지니어링, ②스포츠과학 ③운송, ④성유, ⑤건설)를 설립한다. 단, 앞으로 프로젝트의 재검토를 2년 마다 실시한다. 많은 협동연구센터가 설립되어 연구내용의 중복이 우려되기 때문에 내용을 검사한다」라고 하였다.

한편 신정권은 협동연구센터(CRC)에 대해서는 제도는 유지하지만 평가기준을 세계수준에 두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위에서 말한 신정권의 첨단기술중심의 자세가 나타나 있다. 그리고 협동연구센터의 예산은 증가하였지만, 노동당 정권이 제시한 5개 센터의 신설은 1996년 11월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지 않고 있다.

5) 대학 등 고등연구기관 관련 예산

<표3>에 1996/97년도 예산 대학 등 고등연구기관에 있어서의 연구비를 나타내었다. 대학에 있어서의 연구개발은 고도기술수준의 것이 많아, 위에서 말한 신정권의 사고방식에 따라 하워드 정권은 대학의 연구개발예산을 증액하고 있다.

<표3>에 나타난 주요 항목에 대하여 아래에 약간의 설명을 추가한다. 운영경비를 위한 지원금(University Operating Grant)은 대학에 있어서의 연구활동에 충당하기 위한 지원금이며, 학생 수, 대학원생 수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교부된다.

연구지원금(Research Grant)은 대형연구지원금(Large Grant Scheme)과 소형연구지원금(Small Grant Scheme)으로 나눌 수 있다. 대형연구지원금은 사회과학, 인문과학, 수학, 이론물리학 분야에서 2만 호주달러 이상의 연구가 대상이 된다. 소형연구지원금은 그 이하의 것이다. 대학원 연구장학금(Postgraduate Awards)을 일반장학금과 산업장학금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전자는 4,000명에게 최고 19,827 호주달러가 교부되고, 후자는 500명에게 역시 최고 19,827 호주달러가 교부된다. 그러나 후자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기업으로부터 총 1만 호주달러의 원조를 받는 것이 조건으로 되어 있다. 특별연구원(Research Fellowship)은 박사학위 취득자 이상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장학금이다. 이것은 4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Australian Postdoctoral Research Fellowship(APRF)은 통상 박사학위 취득후의 경험이 3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Australian Research Fellowship(ARF)은 박사학위 취득후의 경험이 3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또 Queen Elizabeth II Fellowship(QEIIIF)은 박사학위 취득후의 경험이 3년 이상인 특별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Senior Research Fellowship(SRF)은 박사학위 취득후의 경험이 15년 이상의 특별히 저명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연구센터(Research Center)프로그램은 호주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 교부되는데 두가지 형태가 있다. Special Research Center와 Key Center of Training and Research이다.

연구시설(Research Infrastructure) 프로그램은 대학의 연구시설정비, 유지를 위해 교부되는데 두가지 형태가 있다. Research Infrastructure Block Grant(RIBG)와 Research Infrastructure (Equipment & Facilities) 프로그램이며 후자는 대학 이외의 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기기정비에 충당된다. 공동연구(Collaborative Grants)프로그램은 대학등 고등교육기관과 산업계의 공동연구로 호주의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에 교부된다. 그러나 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측으로부터 지원금과 동액의 자금을 거출받을 필요가 있다.

6) 세제의 개요

① 50% 세제 개정의 배경

연구개발촉진우대세제는 선거전부터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동 세제에 대한 비판은 ①세제상의 조치는 효과를 보기 어렵고, ②단순히 절세대책에 사용되고 있으며, ③제도의 상

<표 3> 고등교육기관 예산(1996/97년도)

(단위: 백만 호주달러)

지원금의 형태	금액
운영경비를 위한 지원금	887.0
연구할당분(Research Quantum) 연구훈련분 국립대학 운영지원금	276.0 476.0 134.0
특정연구프로그램	396.8
연구지원금 호주대학원(Post Graduate) 연구장학생 특별연구원 연구센터 연구시설 협동연구지원금 해외대학원(Post Graduate) 연구장학생 Learned Academies 꽃출판문대 연구평가프로그램 기타 연구기금	121.1 79.3 24.4 18.7 99.7 20.5 15.2 1.5 3.3 0.7 12.5

출처: Science and Technology Budget Statement '96/'97.

세가 불명료하며, 기업마다 운용이 들쭉날쭉하고, ④세제상의 혜택을 받은 기업이 회계상의 공개의무를 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점으로 집약된다. ③, ④는 호주증권위원회(ASC)로부터도 제도를 시급히 재검토하도록 지적되었다. 본 세제 개정의 더욱 커다란 배경은 신정권의 기본방침으로서의 예산의 삭감 입력이다.

신정권 발족 후, 본 제도를 둘러싸고 활발한 이해관계자의 진정·로비활동, 관련 정부기관 등(산업연구개발국(IRDB), 호주증권위원회(ARS)의 보고, 신문·전문잡지의 보도 등이 있었다. 이러한 경위를 거쳐 1996년 7월 23일 먼저 연구개발 신디케이션제도의 폐지가 주장되었다. 동 제도는 복수의 기업이 출자하여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에(개개 출자회사의 이익에 관계없이) 연구개발회사 전체적으로 이익에 과세하는 제도이다. 본 제도에 대하여 신정권은 현행 신디케이션 제도는 순수한 연구개발조합이라기 보다는 절세의 수단이 되고 말았다고 평가하고 있어 이번에 동 제도의 폐지에 이르렀다.

다음으로 8월 20일에 예산서 속에서 150%세제가 125% 세제로 변경되었는데, 본 세제개정에 대해서는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조만간 법안이 의회에 제출된다.

② 구 150% 세제의 개요

연구개발촉진 우대세제는 보조금, 저리융자, 이자 補給과 함께 전략적 연구개발지원(R&D STARD: Strategic Assistance for Research & Development)정책으로 위치되어, 1985년 7월 1일부터 실시되어 온 「150% 세제」는 폐지되고, 새롭게 「125% 세제」가 도입되었다.

전정권 시대의 「150% 세제」에 대하여 먼저 개요를 살펴보자. 이것은 통칭 150% Tax Cession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으로,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50%분을 경비로서 계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10만 호주달러의 연구개발비용을 투자한 경우, 150만 호주달러를 경비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 세제상의 우대조치의 운용은 당시의 구산업·과학·기술성(산업연구개발국:IRDB)과 세무당국이 협력하여 실시되었다. 모든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산업·과학·기술성으로부터 연구개발을 하는 기업이라는 등록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1995년 12월 6일에 발표된 전정권의 신과학기술정책(Innovation Statement)에서도 세제상의 우대조치에 대한 재검토가 제시되어, 정권교체가 아니어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③ 새로운 125% 세제의 개요

개정 후의 「125% 손금산입세제」에 대하여 말하면, 기본적인 사고방식, 틀, 제도운영기관은 변함이 없다. 커다란 변경점은 손금산입율이 125%로 인화된 점이다. 이것이 위에 말한 연구개발세제에 의한 감수전망액의 감소로 이어지는 커다란 요인이다.

다음으로 신제도를 이용하는 측에서 가장 중요한 공제대상이 되는 시험연구비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나 있다. 먼저, 연간연구개발비 2만 호주달러를 넘는 경우에 1996년 8월 20일 오후 7시 30분(동부시간) 이후에 발생한 시험연구비용(일부 예외 있음)이 대상이 된다. 그러나 연구개발이 ①혁신성을 갖든가 기술적 위험을 동반하는 것, ②연구개발의 주요부분이 호주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③연구개발성고가 단기간에 실용화되는 것, ④호주경제의 향상에 유용하다는 조건이 부여된다.

대상이 되는 비용으로는 ①임금·급여 및 기타 노무비(125% 공제), 연구개발의 핵심이 되는 기술사용료(100% 공제),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지원금(125% 공제), 파일럿 플랜트(125% 공제), 금리(100% 공제), 연구개발위탁계약(「150% 세제」 때는 150%로 되어 있었다).

위탁계약처는 「150%세제」 시대에는 공공기관 등에서 산업연구개발위원회(IRDB:Industrial Research & Development Board)에 등록된 기관이어야 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신제도 하에서도 답습될 전망이 열거되어 있다. 그리고 연구개발용 건물은 대상이 되지만, 통상의 생산설비용 건물과 마찬가지로 취급으로 되어 있으며 40년 상각이 된다. 참고로 근거법은 세율 등을 규정하는 「소득세법(Income Tax Assessment Act)」과 우대세제의 적용제도를 규정하는 「산업연구개발법(Industrial Research & Development Act)」이다.

④캐피탈 게인세의 구제조치

직접 연구개발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캐피탈 게인세의 구제조치는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본 제도는 중소기업의 오너가 자기의 비즈니스를 매각하고 1년 이내에 유사한 비즈니스에 재투자한 경우의 캐피탈 게인세를 경감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적용은 1997년도 7월 1일부터이며, 상한은 50만 호주달러로 되어 있다. 이 제도에 의해 비즈니스의 매각이 보다 자유로워지게 되어,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체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7) 과학·기술·관광성의 예산체계

성청별 과학관련 예산 중 고용·교육·훈련·청소년문제성은 이미 살펴보았고, <표4>에 산업·과학·관광성의 과학기술관련 예산을 시책의 체계와 함께 나타내었다. 내용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진다. ①과학기술정책의 기획입안사무, ②개별기업의 지원시책, ③산업진흥시책, ④산업계·대학·국립연구기관의 연계촉진시책, ⑤국립연구기관에 있어서의 연구개발의 실시의 5가지이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①과학기술정책의 기획입안 사무는 수상과학공학자문위원회(PMSEC), 과학기술조정위원회(CCST), 호주과학기술공학자문위원회(ASTEC)의 사무국이 수상부에서 산업·과학·관광성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중요성은 비약적으로 증대하게 된다.

<표 4> 산업·과학·관광성의 과학기술시책 체계(1996/97년도)

(단위: 백만 호주달러)

	'95/'96	'96/'97
과학기술정책입안		
수상자문기관(PAISEC, CCST)의 사무국 업무 독립정책자문기관(ASTEC 등) 사무국 업무 과학정책입안 업무		

	'95/'96	'96/'97
기업원조(Ausindustry)		
연구개발우대조치 연구개발촉진지원금 연구개발촉진용자 대형연구개발지원(R&D START Program) 기업개발지원(효율향상·국제경쟁력 향상 지원) 기업 네트워크 지원 기업개발 프로그램	6.5 28.3	9.3 25.8
산업개발		
연구성과실용화지원(ATG Limited) 의약품산업개발 공업소유권관련 업무 컴퓨터도입지원 통신산업개발	106.3 64.1	189.1 56.5
국제적 정보·통신산업육성(Partnership Program)		
재생가능에너지산업개발 산업혁신프로그램 지원금	52.4	117.9
과학기술·산업연계		
협동연구센터(CRC) 대형국립연구시설프로그램 우주개발 국제과학기술프로그램 과학기술 Awareness(유학지원·표상 등)	132.7 6.4 2.7 5.6 1.7	145.1 17.0 2.6 5.6 2.0
국립연구기관에 있어서의 연구개발실시		
호주해양과학연구소(AIME) 호주핵과학연구기관(ANSTO) 연방과학산업연구기관(CSIRO)	16.6 65.6 416.7	16.4 63.7 443.6

주석1) 총괄연구실, 선임기술원(Tel: 02-250-3076)

※본자료는 JETRO Technology Bulletin. No. 373의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